

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            | 접수일      | 처리기간<br>2일               |
| 신고인  | 성명<br>(대표자) | 한글<br>한자 | 생년월일<br>(법인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) |
|      | 상호 또는 명칭    | 사업자등록번호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영업소 소재지     | (전화번호: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변경 내용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| 변경 후 | 그 밖의 사항 |
| 1. 상호 또는 명칭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2.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 |      |      |         |
| 3. 영업소 소재지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4. 자본금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5.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6. 사무실 보유(면적)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  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유의사항

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 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

신고인  
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자치구